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USB ○○○ ○○시스템 구축·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남구

내 용

광주광역시 남구 ○○실에서는 휴대용저장매체(USB) 사용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안의 기밀성 유지와 사내 중요정보보호를 추진하고,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관 내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‘○○USB ○○○ ○○시스템 도입’ 사업⁵¹⁾을 추진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관서에는 사업기간 동안 모든 물품이 정상납품 되었음에도 ○○USB 구매 수량이 전체 직원수인 95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68개를 구입하여 전체 직원에게 배포되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만 ○○USB를 배포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개인 PC 자료의 이동 등을 하고자 할 때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못하여 불만을 야기할 것을 염려하고, 향후 모든 직원에게 배포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

51) 가. 사업기간 : 2014. 12. ~ 2015. 2.

나. 사업비 : 55백만원

다. 사업내용 : 보안USB 솔루션(서버 1개, Client 1,000개), 보안USB 8GB 메모리 268개

등을 통해 ○○USB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일까지 약 1년 7개월 간 운영하지 못하였다.

결과적으로 위 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납품된 정보시스템을 약 1년 7개월 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였다

조치할 사항 **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**

[시정]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